# 대구직할시달서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94. 4. 2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박양헌 사회·도시위원장외 12인

나. 제 출 일 자 : 93. 12. 7

다. 회 부 일 자 : 93. 12. 23

라. 상 정 일 자 : 94. 4. 22

2. 제안설명요지(설명자 : 박이찬의원)

가. 제안이유

○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 대상 자격요건인 새마을 정신 함양부분과 추천자로 되어 있는 새마을 지도자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음.

나. 주요골자

○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중 새마을 정신부분과 새마을 지도자의 추천 조항 삭제

3. 전문위원 검토 의견 요지(전문위원 허면)

이 조례는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을 만들어, 이 기금으로 영세민에게 자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융자해 주는 관련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금번 개정안을 보면, 제5조 제1항중 새마을지도자의 영세민융자 대상자 추천권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것은 특정국민운동단체의 이념과 관련회원의 추천 권한을 삭제하여 특정단체의 특별한 관여를 베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 짐니다. 문민정부 시대에 적합한 조정으로 생각되어 의견을 같이 함.

4. 토론요지

손영일 의원 : 제5조 신청절차에서 새마을지도자 추천권을 삭제한다면 해당동 구의원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토록 하자

김영수 · 전부진 의원 : 현재 신청절차 과정에서 해당동 구의원에게 협의 및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으므로 구의원 추천규정을 명확하게 삽입하는 것은 필요성이 없으며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임.

5. 수정안요지

없슴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반대 : 없슴

7. 첨부 : 대구직할시달서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대구직할시달서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새마을 정신"을 "생활력"으로 한다

제5조 제1항중 "새마을 지도자"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조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등 새마을 정신이 강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 제3조(융자대상) ① ……<br>……생활력……<br>……<br>……<br>…… |
| 제5조(신청절차)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동의 새마을 지도자 통장 및 동장의 추천을 받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 보증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절차) ① ……<br>……(삭제)……<br>……<br>……<br>…… |